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 책임연구원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 개요

- 연구명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예산 : 15,000,000원
- 연구기간 : 2014년 4월 ~ 9월
- 연구진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에 엄격한 윤리강령을 갖추고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
 - 21세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전문학술지가 국내 학계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연구수행에 있어 윤리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수준은 서구사회의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윤리규정을 제공하고 인식전환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유니세프(UNICEF) 산하 연구기관을 위시하여 총 다섯 개의 국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뜻을 모아 발간한 아동대상 연구윤리 개론서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은 지금까지 발간된 연구윤리 개론서들 중 보편타당성과 시의성, 전문성이란 면에서 단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국내 청소년 정책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올바른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ERIC 저작물을 번역 및 보급하는 것이 원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판단됨.

○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총 200여 페이지로 구성된 원서 내용 중 절반은 개론을 나머지 절반은 세계 곳곳의 아동 연구자들이 제공한 사례연구(case study) 22건을 담고 있음.
- 본 수시과제의 결과물로 UNICEF의 동의하에 ERIC 원서의 번역본 출간과 아울러 ERIC을 위시한 다양한 연구윤리 관련 국내·외 문헌과 한국 사례들을 고찰한 보고서 발간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번역가와 번역 업체들 중 샘플번역 심의를 통해 우수한 업체와 번역가를 선정하였음. 번역물은 연구진, 뉴욕주립대(SUNY) 교수, 그리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삼중의 감수를 통해 원문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동시에 번역물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자연스러운 어휘로 구성된 ERIC의 한국어판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역점을 두었음.
- ERIC에서는 한국현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지 못한 점이 있기에, 국내 아동 및 청소년 학계의 연구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사례분석과 고찰을 하여 이를 보고서에 추가로 제시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연구자들에게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며 권리침해를 예방.
- 올바른 연구 풍토를 확립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 한국 고유의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연구윤리의 확립을 도모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4
II.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7
1.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	9
2.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고찰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11
3.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관한 제언들	20
III. 아동·청소년 대상 언론의 취재·보도 윤리	23
1. 세계 각국 언론의 윤리규정과 한계	26
2. 아동·청소년 취재·보도 윤리 고찰 - 해외 연구 중심으로	30
3.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보도 윤리에 관한 제언들	32
IV.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의 지침	35
1. 윤리지침: 피해와 혜택	37
2. 윤리지침: 사전 동의	39
3. 윤리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42
4. 윤리지침: 지불과 보상	44
5. 연구자 지원	45
6. 연구착수(Getting Started)	46
V. 국내 사례연구	49
사례 1) 탈북 청소년 면담연구에서의 비밀 보장의 문제	51
사례 2) 대안학교 여학생의 비밀	53

사례 3) 아동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연구가 그들의 삶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고려	55
사례 4) 아동·청소년 대상 외상 사건에 관한 연구 시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성: 떠올린 외상 경험으로 인한 불쾌감 및 주관적 고통감에 대한 사후개입의 필요성	58
사례 5) 조사 및 연구 중 우연히 발견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60
사례 6) 아동을 연구대상에서 연구주체로	63
사례 7) 아동·청소년 관련 실험연구 세팅에서의 문제점	65
사례 8)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관련 연구와 연구윤리	67
사례 9)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위한 연구 대상 선정	70
사례 1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의 해석과 서술의 충실성	72
사례 11) 유아의 자발적 연구참여권과 연구참여 철회권 지원을 위한 방안 ..	75
사례 1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자의 윤리 교육 ..	78
VI. 요약 및 논의	81
1. 요약	83
2. 논의	85
참고문헌	87

표 목 차

〈표 II-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9
〈표 II-2〉 뉴림버그 코드의 10대 조항	12
〈표 II-3〉 국제 ERIC 현장 7대 조항	14
〈표 II-4〉 유엔의 아동권리선언문 10대 조항	15
〈표 II-5〉 미국 대학교의 IRB 양식(원문)	17
〈표 II-6〉 미국 대학교의 IRB 양식(한글 번역문)	18
〈표 IV-1〉 피해와 혜택과 관련하여 UNCRC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지침	38
〈표 IV-2〉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UNCRC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지침	41
〈표 IV-3〉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UNCRC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지침	43
〈표 IV-4〉 지불 및 보상과 관련하여 UNCRC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지침	45
〈표 IV-5〉 연구 착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46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세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전문학술지가 국내 학계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계 및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연구 수행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과중심의 학문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 한다. 국내·외적으로 인권의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서구사회와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어떤 사회적 이익도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더욱 신중히 진행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된 연구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쉽게 상처받고 피해 회복도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연구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연구수행에 있어 윤리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수준은 서구사회의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 등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반인륜적·비도덕적 연수수행에 대한 자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보다 각별히 주의할 기울여야한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윤리규정을 제공하고 인식전환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수시과제를 통해 유니세프(UNICEF)가 2013년에 발간한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이라는 아동대상 연구윤리 지침서를 번역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간된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개론서들 중 보편타당성과 시의성, 전문성이란 면에서 단연 으뜸이라 평가받고 있는 이 지침서를 번역하여 관련 학계 및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고, 국내실정을 반영한 본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미진했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연구자가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연구윤리 문제들에 대한 개별 사례들을 소개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수시과제는 유니세프(UNICEF)의 동의하에 ERIC 원서의 번역본 출간과 아울러 ERIC을 위시한 다양한 연구 및 보도 윤리 관련 국내·외 문헌과 한국 사례들을 고찰한 보고서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총 200여 페이지로 구성된 ERIC 원서 내용 중 절반은 개론을 나머지 절반은 세계 곳곳의 아동 연구자들이 제공한 사례연구(case study) 22건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번역가와 번역업체들 중 샘플번역 심의를 통해 우수한 업체와 번역가를 선정하여 번역작업을 위탁하였다. 번역물은 연구진, 뉴욕주립대(SUNY) 교수, 그리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삼중 감수를 통해 원문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동시에 번역물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자연스러운 어휘로 구성된 ERIC의 한국어판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역점을 두었다.

ERIC 번역서에는 한국현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아동 및 청소년 학계의 연구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사례분석과 고찰을 하여 이를 보고서에 추가로 제시하였다. 1) 탈북 청소년 면담연구에서의 비밀 보장의 문제, 2) 학교폭력의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에서의 비밀 보장이나 부모의 권한 문제, 3)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연구 참여에 대한 문제 등 한국적 상황에 빈번히 발생하는 12개의 사례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정착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제3장은 10년간 방송기자와 앵커로 활동하다 텍사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기자윤리를 연구하고 있는 최현정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한국, 미국 등 세계 각국 언론의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 및 보도 윤리 규정을 살펴보고,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자와 언론인, 연구와 취재, 보고와 보도는 매우 유사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학자가 문화기술적 조사(ethnographic study)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과 언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은 매우 유사하며, 연구와 취재 과정 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점도 서로 흡사하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 및 보도 윤리를 살피는 것 또한 우리 사회에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학계의 연구윤리 정착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여 이 장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1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양에 달하는 ERIC의 4대 윤리지침(피해와 혜택, 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지불과 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린 요약본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ERIC의 내용 중 본격적인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자가 체크해야 할 28개의 리스트를 같은 장에 주제별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부딪친 경험들을 토대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장에 실린 총 12개의 사례를 통해 학계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연구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자의 연구윤리 인식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II 장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1.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
2.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고찰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3.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관한 제언들

제 II 장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1.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분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학회 등 소수의 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학술지를 년2회 내지 4회 발행하기 시작하던 것이 2014년 현재 총 6개의 청소년분야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자리매김한 상태로 이들의 발행횟수도 년4회 내지 12회로 늘어나 다량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표 II-1 참조). 이밖에 각종 청소년학회에서 발행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어오고 있다.

표 II-1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학술지명	발행기관	최초발행년도	발행횟수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0	년2회
			년4회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993	년2회
			년2회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993	년4회
			년12회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999	년2회
			년4회
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3	년4회
미래청소년학회지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04	년4회(예정)

* 출처: 김청송(2014) 청소년심리학의 이론과 쟁점. 서울: 학지사.

이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계의 꾸준한 관심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과중심의 학문풍토로 인해 연구 수행의 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윤리의식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성과중심의 연구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자들은 때때로 연구윤리와 책임의식을 등한시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서이중, 2013). 이옥은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의 상식과 양심에만 의지하고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였다(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서이중(2013)은 연구윤리 위반의 폐해와 부작용을 개인적, 학문공동체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윤리 위반은 연구자 개인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오명과 위신추락을 가져온다. 그 연구자가 속한 학문공동체는 불필요한 실험이나 조사를 반복해야하며 이는 시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반사례가 반복되다보면 해당 학문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연구윤리 위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부정행위나 인권침해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국가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세계 학계는 해당 국가 소속의 다른 연구자들의 후속연구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위에서 살핀 세 가지 차원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적절한 연구과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연구대상자가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인지발달학적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성숙한 판단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더욱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궁극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연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재연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한국 연구풍토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연구자에게 연구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는 연구자의 의무이다.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p. 4)

2.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고찰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 등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반인륜적·비도덕적 연구수행에 대한 자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니세프(UNICEF)의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을 포함한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 관련 강령과 지침서들의 효시는 뉴럼버그 코드(Nuremberg Code)로 알려져 있다(Steneck, & Zinn,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시라는 이유로 수많은 인권침탈이 정당화되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학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생체실험들이 나치 독일의 주도로 자행된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은 끝이 나고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주치의이자 유대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진두지휘한 칼 브랜트(Karl Brandt)를 포함한 총 20명의 독일 의사들과 3명의 나치 고위간부들이 독일의 뉴럼버그에서 전범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보편타당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없던 전시상황에서 자신들에 의해 행해진 생체실험에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1947년 뉴럼버그 전범재판소는 판결에서 의학연구에 관한 윤리 조항들을 제시하고 이들의 죄상에 따라 각각 사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10대 조항으로 구성된 뉴럼버그 강령이 공포되었는데, 인간이 실험연구 대상으로 포함될 때 연구자의 의무와 피험자의 권리를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인류역사상 최초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표 II-2 참조).

뉴럼버그 코드의 핵심은 제1조항인 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에 대한 규정이다. 나머지 조항들과는 달리 이 조항에는 141개의 단어로 이뤄진 장문의 부연설명을 달아 놓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 동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① 실험대상자가 실험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②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와 배경지식(예: 실험의 목적, 기간, 방법, 피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편 및 위험 등)이 제공되어야 하고, ③ 강압이나 회유, 속임수에 의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표 II-2 뉴럼버그 코드의 10대 조항

1.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은 실험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폭력, 사기, 속임, 협박, 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이어야 하며, 이해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주관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대상자가 내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전, 그에게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실험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불편 및 위험, 실험에 참가함으로써 올 수 있는 건강 혹은 개인에게 올 영향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동의의 질(the quality of the consent)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시작하고 지도하며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있다. 이것은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위임할 수 없는 개인적 의무이자 책임이다.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사회의 선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만한 것이어야 하며,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연구이어서는 안 된다.
3.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동물실험의 결과와 질병의 자연경과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기대되는 결과는 연구의 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험 과정에서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나 부상은 방지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5. 연구진이 피험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사망이나 불구가 초래될 가능성이 선험적으로 예견(priori reason)된다면 어떠한 실험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실험에서 무릅써야 할 위험의 정도가 그 실험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humanitarian importance)보다 커서는 안 된다.
7.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의 가능성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와 준비가 필요하다.
8.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scientifically qualified persons)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실험에 관련되어 있거나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실험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피험자는 자신이 계속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때라도 참여를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10. 실험을 주관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선의(good faith), 전문성(superior skill), 그리고 분별력(judgment)에 비추어, 만일 실험을 지속할 경우 피험자들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험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그 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상기 뉴럼버그 코드 번역문은 의료·윤리·교육이란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에 실린 김옥주의 논문 『뉘른베르그 강령과 인체 실험의 윤리』(2002, p.16)와 한국아동권리학회의 저서 『아동권리 보호와 연구윤리』(2005, pp. 28-29)에 실린 번역문을 원문(U.S. Government, 1949, pp.181-182)과 대조 및 검토하여 보다 원문에 충실하고 명료한 표현을 취사선택하고 불분명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저자가 새롭게 정리한 내용임. 본서는 독일지명인 Nuremberg를 딴 강령의 번역을 영어식 발음을 따라 뉴럼버그 코드로 통일하였다. 보통 유럽의 지명은 현지어가 아닌 영어식 표현을 따르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이 강령이 세계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도 미국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뉴럼버그 코드 제정 이후 세계의학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는 보다 구체화한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을 1964년 헬싱키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이다. 처음 발표했을 당시는 1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수차례의 총회를 거쳐 2013년 브라질 개정본에는 총 37가지 조항을 주제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연구윤리사적으로 이 선언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다음 세 개의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① 의학 관련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본격적으로 공식화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기여했으며, ② 아동과 같이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를 하였더라도 자기결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는 법적 대리인(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최초의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③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s)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서이중, 2013;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8조 : 잠재적 피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연구자는 법정대리인(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부터 동의(informed consent)를 구하여야 한다.

29조 :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잠재적 피험자라도 연구 참여 결정을 찬성할 수 있다면 연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더불어 피험자 본인의 동의도 구하여야 한다. 잠재적 피험자의 반대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3조 : 연구계획서는 심의, 조언, 지도, 승인 등을 위하여 연구시작보다 앞서 해당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자와 의뢰자 및 기타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 국제규범과 기준 뿐만 아니라 연구가 수행되는 나라의 법과 규제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항으로 말미암아 이 선언에서 피험자보호를 위하여 정한 사항을 축소, 배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출처 : World Medical Association(2013)

이후 유엔(UN)산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관이나 미국 등 서구사회는 저마다 연구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유엔 산하 유니세프(UNICEF)의 주도로 아동¹⁾ 대상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CRC)의 1조는 “18세 미만의 성인이 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RIC은 서두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15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ERIC이제공하는 윤리규범이 쉽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지침서인 ERIC이 발간되었다. 유니세프는 국제 ERIC 현장에서 “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적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등 연구자의 7대 지침을 제시하였다(표 II-3 참조).

표 II-3 국제 ERIC 현장 7대 조항

국제 ERIC 현장 7대 조항

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는 모두의 책임이다.
2. 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적 연구의 핵심이다.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정당하고 공평해야 한다.
4. 윤리적 연구는 아동에게 득이 되어야 한다.
5.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는 반드시 아동의 사전 동의와 지속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7. 윤리적 연구는 지속적인 성찰을 요한다.

※ 출처 : UNICEF(2013).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UNICEF.

ERIC의 현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 규정의 일차적 책임은 각 연구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겠지만, 더 나아가 연구윤리 확보라는 소명의식을 지닌 연구 커뮤니티의 공동의 의무이다. 이 같은 아동의 인권보호는 ‘존중’에서 시작된다. ERIC은 아동의 의견, 문화, 역량을 존중하고 아동의 다양한 기여를 중시한다고 강조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 중에 “균형 있고 공정한 이해”에 기반을 둔 아동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철회의사를 밝힐 경우 연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ERIC의 조항들은 앞서 살핀 뉴러버그 코드와 헬싱키 선언문의 내용과 함께 195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 기반을 둔 것이다.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의 요지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표 II-4 참조).

유엔의 아동권리선언문 10대 조항

1.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3.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5.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6.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7.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8.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는 모두의 책임이다.

※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배우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건복지부, 2009)

뉴럼버그 코드와 헬싱키 선언문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1975년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현재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IRB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인권보호의 의식은 미약하였다. 이 시기에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하였으며, 흑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인 임상실험들이 미국 정부의 묵인 또는 주도하에 자행되곤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앨라배마 주 시골마을에 거주하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매독에 관한 실험연구(Tuskegee syphilis experiment)를 들 수 있다.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흑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약 30년간 터스키기 지역 흑인남성들을 대상으로 매독질환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을 피험자의 동의없이 자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미국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부상하였다(남명진, 2011). 1970년 대는 미국 사회 저변에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의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미 의회는 1974년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게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적 검토와 규제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Steneck & Zinn, 2005). 이에 대한 결과물이 벨몬트 보고서(Belmont Report)와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윤리심의위원회)이다.

벨몬트 보고서는 기존의 의학연구에 한정되었던 피험자에 대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분야 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의 피험자에 대한 보호윤리 원칙을 제시한 최초의 문건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이중, 2013). 이 보고서는 피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윤리적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여건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연구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위험에 관한 정보는 피험자의 협조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유보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생명윤리, 2000; 서이중 475 재인용). 둘째로, 실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피험자의 숙지(comprehension)를 위한 노력의 여부이다. 피험자의 인지능력이나 성숙정도 등에 따라 연구자는 정보제공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피험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오직 자발적으로 응했을 때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벨몬트 보고서는 강압뿐만 아니라 권위를 내세우거나²⁾ 부적절한 보상이나 대가 등을 이용한 회유에 의한 피험자의 비자발적 연구 참여는 비윤리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IRB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소관으로 미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 태아, 아동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윤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IRB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1) 연구자와 연구대상 아동·청소년과의 관계, (2)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얻는 구체적인 절차 및 계획, (3)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4) 연구수행에서 적용되는 설문문항, 인터뷰, 질문 등 모든 개입과정 등을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명토록 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IRB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표 II-5와 표 II-6 참조).

2) 예일대 심리학과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 교수는 1961년 연구자의 권위(authority)에 따른 피험자의 복종(obedience)에 대한 실험으로 미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실험은 특정 상황과 연구자의 권위에 압도된 피험자들은 연구자의 비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주문에도 쉽게 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성년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 대한 보호 및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Children(minors under age 18) as Participants

(Do not leave any questions blank, indicate n/a when necessary)

1. Describe the age ranges, gender, and school grades of children: (If more than one group will be studied, please provide information for each (e.g. control group or learner group):

· Are any of the children wards of the state? * Yes_____ No_____

*If yes, please explain:

2. Specify where participants will be recruited from (schools, community centers, support groups, etc.) and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those being recruited and with the organization from which they will be recruited:

3. For research to be conducted in a group setting (e.g. classroom, social or educational group) provide the following details:

· Is the entire group expected to participate? Yes_____ No_____

· Describe procedures that will be followed for those who will not be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for any reason: This is required for all research conducted in a group setting and should at a minimum, address those who do not wish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4. Describe the procedures you will use to obtain child assent (formal assent is required from all children over the age of 7). At a minimum you must include details on who will discuss the study with children, who will collect the signed assent forms, how they will be returned to the researcher, how they will be linked with the parent consents, etc. Please be as specific as possible.

5. Describe the procedures you will use to obtain consent from parents (consent is required from parents for all minors). At a minimum you must include details on who will contact the parents, who will collect the signed forms, how they will be returned to the researcher, how they will be linked with the students, etc. Please be as specific as possible.
6. Identify all interventions, tests, questionnaires, interviews, surveys, etc. that will be used with your participants and indicate which are considered to be standard measure and those which are considered to be experimental (novel or new application from which they were originally intended). You must attach copies of all materials to be used with participants.
7. Include additional information, data or comments that you feel are necessary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your proposal involving children.

※ 출처 :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ttp://www.albany.edu/orrc/irb-forms.php>

표 II-6 미국 대학교의 IRB 양식(한글 번역문)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Office of Regulatory & Research Compliance

아동 (18세 미만)의 연구참여사용
(모든 문항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해당사항없음’ 으로 작성하십시오)

1. 대상 아동의 연령대, 성별, 학년대를 서술하십시오 (만약 연구대상이 두 그룹 이상이라면 각각의 그룹에 대해 모두 설명하십시오) (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 대상 아동 중에 정부가 후견인인 대상자가 있습니까? _____에 _____아니오
- * 만약 있다면, 해당 아동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_____

2. 연구대상 아동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학교, 문화회관, 협력단체 등) 연구자와 해당 단체나 연구대상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3. 연구가 아동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학급, 사회 또는 교육단체),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 단체원 모두가 참여할 계획입니까? _____에 _____아니오
- 단체에 소속된 아동 중 어떤 이유로든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아동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필수 기술사항이며 최소한 이 연구에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4.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에 대해 참여 동의서를 얻는 절차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서술하십시오(7세 이상의 모든 아동모두에게 공식적인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아동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지, 누가 동의 서명된 동의서를 받을 지, 동의서가 어떻게 연구자에게 전달될 지, 관계된 사람이 어떻게 아동의 보호자와 연락되는지에 대해 모두 설명하십시오. 모든 사항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5.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기술하십시오(참여 대상 아동 모두의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대상 아동의 부모들을 만날지,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지, 동의서가 어떻게 연구자에게 전달될 지, 관계된 사람이 어떻게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설명하십시오. 모든 사항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6. 연구과정중에 아동에게 적용되는 모든 개입과정, 테스트, 설문문항, 인터뷰, 질문 등에 대해 모두 기술하고 그것들 중 어느 것에 표준화된 과정이고 어느 것이 실험적인 과정(새롭거나 기존연구에서 변형된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위에 언급된 것들 중 사용되어지는 모든 해당사항에 대해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7. 또한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정보나 데이터, 코멘트가 있다면 첨부하십시오.

3.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관한 제언들

앞서 살핀 것처럼 서구사회의 경우 반인륜적·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사회 곳곳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오랜 기간을 거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가 2008년이 되서야 구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의식수준이 서구 선진국과 견주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서이중, 2008). 2005년 말경에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사태’³⁾를 거치면서 최근 들어서야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최용성, 2007).

이인재(2010)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첫째, 연구자의 무지로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2) 연구부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관행’으로 치부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그리고 3) 황우석의 경우처럼 과열경쟁이나 연구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예: 승진, 연구비, 임용 등)을 탐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범하는 비윤리적 연구행태도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들이 소속된 유치원이나 학교 측의 동의하에 실험이나 설문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부모/보호자와 미성년자인 피험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종종 생략되곤 한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단지 연구대상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으로 연구윤리를 준수했다고 착각하는 연구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학계의 관습이라는 구실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피험자에게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제쳐두고 연구결과에만 매몰되어 있는 연구자들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윤리교육이 절실하다. 최용성(2007)은 “연구윤리에 관한 어떤 윤리적 행위의 기준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연구윤리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레스닉(Resnik, 1998)의 말을 빌려 연구윤리교육을 관행이나 개인윤리의 식에 맡기지 않고 공식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1)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2) 대학·대학원에서의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정착 시키며,

3) 당시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논문을 발표한 연구 부정행위.

3) 초등 및 중등과정에서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기존 교과와의 연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최용성, 2007).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한상연(2012)은 우리나라 연구윤리에 대한 법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규상 간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같이 연구윤리 관련법을 정부 주도로 해나갈지, 아니면 일본, 캐나다, 영국처럼 개별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관련법을 전담하는 국가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 III 장

아동·청소년 대상 언론의 취재·보도 윤리

1. 세계 각국 언론의 윤리규정과 한계
2. 아동·청소년 취재·보도 윤리 고찰
- 해외 연구 중심으로
3.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보도 윤리에
관한 제언들

제 III 장 아동·청소년 대상 언론의 취재·보도 윤리⁴⁾

2014년 4월 9일 서울 중앙지법 기자실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소속 변호사들이 기자들 앞에 섰다.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이 지나치게 취재 경쟁을 벌이며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를 하여 사건 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아동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일부 언론사들이 피해자의 친모나 고모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있던 언니(12세)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가 다니던 학교 화장실까지 찾아 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4년 4월 9일).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 언니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하거나, 그가 지내던 아동보호 센터를 화면에 담고, 머물고 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과잉 취재 때문에 결국 그가 기자들을 피해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김희영, 2014년 4월 15일).

그런데 기자들의 이 같은 행태의 취재와 보도들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인 2014년 3월 19일에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 배상을 하고 관련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다음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2012년 8월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 이른바 ‘고종석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세 곳에 대해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이 불필요하게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취재 보도 형태를 보면, 피해 아동의 그림 일기장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심지어 그의 상처 부위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위성사진과 그래픽 등으로 피해자가 사는 집 주변을 알려줘 그의 가족들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김희영, 2014년 4월 15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취재와 보도 과정에 드러난 국내 언론의 재난 보도 문제점들과 함께 최근 언론계는 물론 국내 사회 전반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언론윤리

4) 최현정(텍사스 주립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 집필하였음

분야가 바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보도 영역이다. 그 이유는 위 사례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폭행을 비롯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를 다루는 언론사들의 취재와 보도 방식에 심각한 문제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4년 4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와 같은 토론회를 비롯해 최근 언론과 인권 관련 단체들이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아동·청소년 취재·보도 문제점들에 주목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중 매체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돼 오고 있는 것과 달리 강력 사건은 물론 일반적 이슈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들의 취재·보도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나 학술적인 연구들이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관련 언론윤리규정들과 함께 해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취재·보도 윤리 의식과 실태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 각국 언론의 윤리규정과 한계

세계 여러 나라 언론인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언론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두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기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Fullerton, 2004). 국내와 해외 언론들의 아동·청소년 관련 윤리 규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한국기자협회는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의 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기자협회는 언론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기자들에게 성범죄를 취재하고 보도할 때 아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마련한 10개의 요강에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한다” 등의 항목을 두고 있다.

또한 ‘고종석 사건’ 보도에서 지적된 것처럼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마련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한 가지 항목만을 두고 기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이보다 앞선 2011년 9월에 역시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마련하고 8개의 주요 분야별 요강에 ‘아동인권’에 관한 취재·보도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기자협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규정을 두어, 언론이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은 물론 일반적 상황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해치지 않도록 더욱 다각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 의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취재와 보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예시 등이 없이 취재 기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다소 원론적 차원이기는 하여도 이처럼 명문화된 규범과 기준, 강령 등이 마련돼 있다 해도 이에 대한 교육이 크게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 실제 언론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김희영, 2014년 4월 15일).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언론이 아동 범죄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평기자는 물론 보도 책임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언론 윤리 교육과 윤리 강령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도, 기사를 많이 작성하고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보도 준칙이나 윤리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 취재와 보도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김수정, 2014년 4월 10일; 최영주, 2014년 4월 16일).

2) 미국

미국의 경우도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재와 보도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미흡하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이다. 미국 내 최대 언론인 단체로 꼽히는 ‘언론인협회(SPJ,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의 ‘언론윤리규정(Code of Ethics)’은 크게 ①진실 보도 (Seek Truth and Report It) ②피해 최소화 (Minimize Harm) ③독립 (Act Independently) ④책임 (Be Accountable)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뉴스 취재원과 보도 대상들에 대한 윤리가 두 번째 부문인 ‘피해 최소화(Minimize Harm)’에 “윤리적 언론인들은 뉴스 취재원과 대상, 그리고 동료들을 존중받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8개 세부 항목에 규정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언론은 청소년 성범죄 용의자나 희생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데 각별히 주의할 것(Be cautious about identifying juvenile suspects or victims of sex crimes)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범에 따른 한 사례를 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역 방송사인 WSOC-TV는 나홀 동안 실종되었던 2살짜리 딸과 어머니의 재회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전 보도에서 어머니를 인터뷰 하면서 실종된 그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신원을 밝혔지만, 그 아이가 유괴범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방송사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그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하였다(Black, Steele, & Barney, 1999).

하지만 실제 취재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 이 같은 아동·청소년 보도와 관련된 윤리 규정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언론인 단체인 SPJ의 윤리 규정에서조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단 한 가지, 그 것도 성범죄에 국한된 것 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 내 언론 윤리강령들은 대부분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Fullerton, 2004). 실제 미국의 16개 미디어 윤리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오직 3개만이 아동 대상 취재와 보도에 관한 윤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Williams, 1997). 또한 개별 언론사들도 자체적인 윤리규정들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루지 않고 있으며(Mackay, 2008), 현장의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윤리강령들을 거의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1997).

3) 기타 국가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나라로 영국이 꼽히고 있다(Fullerton, 2004). 영국의 ‘언론고충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가 제정한 ‘편집인 직업규약(Editor’s Code of Practice)’은 모두 16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두 개 영역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10개의 세부 규정으로 채우고 있다. 이들 규정을 살펴보면,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부모나 동일한 책임이 있는 성인들의 동의 없이는 그들 자신이나 다른 아이들의 안녕(welfare)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인터뷰나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허가 없이는 촬영은 물론 접근조차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해자의 언니를 학교 화장실까지 찾아가 인터뷰하려한 국내 유명 일간지 기자는 취재윤리를 크게 어긴 것이 된다.

영국의 ‘편집인 직업규약(Editor’s Code of Practice)’은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아동들의 취재와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 아래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피해 아동의 신원을 밝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보도할 때 용의자와 피해 아동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도록 언론인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강력한 금지를 나타내는 “must not”이라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언론인들에게 해당 강령들을 단순히 권유하는 차원을 넘어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의 언론단체들은 아동·청소년들과 관련된 취재·보도 윤리 규정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캐나다 기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는 ‘윤리적 언론 원칙(Principles of Ethical Journalism)’과 이 원칙들에 대한 자세한 실천 내용을 제시한 ‘윤리지침(Ethical guidelines)’에서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윤리 강령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에 새로 제시된 이 윤리지침들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기자들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덴마크의 언론노조가 채택하고 있는 ‘행동강령(National Code of Conduct)’은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그들의 감정이나 무지, 자제력 상실 등을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 행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주의할 것을 기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역시 아동과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다.

이 밖에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언론인들이 기자들의 취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지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론윤리규정만 두고 있을 뿐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취재·보도 윤리 규정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Fullerton, 2004).

2. 아동·청소년 취재·보도 윤리 고찰 - 해외 연구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언론윤리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기자들은 대체로 취재나 보도를 할 때 아동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보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시키고 그들의 사진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Fullerton, 2004).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 현장에서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제로 더 조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가 서론 다른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Coleman, 2011). 슬로픈과 그의 동료들(Slopen et al., 2007)이 아동과 성인들의 정신건강 이슈를 다룬 미국 내 신문기사 천2백여 개를 분석한 결과 아동들의 정신질환을 보도한 기사들이 성인들의 문제를 다룬 기사들보다 전문가 의견이나 추가 정보 참조, 정신질환 통계 등 “책임감 있는 언론 요소들(elements of responsible journalism)”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자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다. 맥케이(Mackay, 2008)가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등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 6곳의 기사들을 내용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뉴스 취재원이 되어 발언이 인용될 경우 인용문 세 개 가운데 두 개 꼴로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의 취재에서 아동들은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 한 것이 미칠 파장, 특히 장기적 관점의 결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Elliott, 1990; Tompkins, 1999). 따라서 그러한

아동들이 취재에서의 자신들의 발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거나 특히 신원이 노출될 경우 다른 여러 잠재적 위험에도 노출 될 소지가 더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풀러튼(Fullerton, 2004)도 캐나다 지역의 언론들을 사례 분석하면서 온타리오(Ontario)의 한 일간지(The London Free Press)가 그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던 ‘아이들에게 아침을(Breakfast for Kids)’이라는 행사에서 굶주린 아이가 시리얼을 먹고 있는 사진을 내보내고 그의 신원을 밝힌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엘리엇(Elliot, 1990)은 기자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나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을 다루는 기사일수록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스톤(Stone, 1999)의 글에서 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자들에게는 취재와 보도를 할 때 ‘피해를 최소화(minimizing harm)’ 하려는 것보다 ‘언론의 사명(journalistic mission)’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 기자들이 아동들을 취재할 경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취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99명의 기자들을 실험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텍사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콜맨(Coleman, 2011)교수는 먼저 실험에 참가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아동들과 성인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콜맨은 ‘사생활(privacy),’ ‘피해 줄이기(avoiding harm),’ ‘고지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성인인 기자와 취재원인 아동 사이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 취재원으로서의 아동들의 ‘신뢰도(credibility),’ 그리고 ‘책임의 귀속(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등 모두 6가지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 기자들의 태도 차이를 자세히 분석했다.

이 가운데 기자들은 ‘사생활(privacy),’ ‘피해 줄이기(avoiding harm),’ 그리고 ‘고지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항목에서 성인들보다 아동들에게 더 많이 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기자들은 취재원으로서 아동들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에 있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염려만 보이고, 취재 대상이 아동이든 성인이든 자신들과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콜맨은 기자들의 이런 태도들이 실제 취재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덕발달이론(Moral Development Theory)’을 이용해 성인 관련 이야기들(예; 성인 노숙자)과 아동 관련 이야기들(예; 약물과 어린이)에 있어서 기자들의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자들은 성인 관련 이야기와 아동 관련 이야기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약자들(weaker parties)에 속하는 아동들을 다룰 때에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같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결과들은 아동들을 취재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의 태도가 실제 취재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콜맨은 이와 함께 기자들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사진을 성인들보다 덜 내보내지도 알아보았는데, 이것 또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콜맨은 언론윤리 측면에서 아동들의 사진을 내보내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 역시 기자들이 아동들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말하던 그들의 태도와 실제 취재·보도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보도 윤리에 관한 제언들

뉴욕 타임스 등에 주로 어린이 관련 글들을 기고해온 프리랜스 작가 스톤(Stone, 1999)은 기자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취재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문화된 윤리 규범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기자들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재와 보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자신들 나름대로의 윤리 지침을 개발하게 된다고 한다(Allen, 2003). 사정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풀러튼(Fullerton, 2004)의 지적처럼 기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어떤 동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취재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취재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심리적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풀러튼(Fullerton, 2004)은 사회과학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 연구자들에게 따르도록 요구하는 윤리 지침 같은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회과학적 규약(social scientific protocols)’을 언론인들이 뉴스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접하거나 인터뷰 할 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사들이나 기자들이 그런 사회과학 연구 윤리 지침을 차용해 취재 현장에 적용할 경우 아동들을 다루는 보도에서 훨씬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 풀러튼(Fullerton, 2004)의 주장이다.

기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취재와 보도를 할 때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의 아동대상 ‘보도지침(Reporting guidelines)’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은 모두 6개 항목의 ‘기본원칙(Principles)’과 6개 항목의 ‘아동대상 인터뷰 지침(Guidelines for interviewing children),’ 그리고 7개 항목의 ‘아동대상 보도 지침(Guidelines for reporting on children)’과 함께 그 항목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포함해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들은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처럼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아이의 아픔이나 슬픔이 재발하도록 하는 언급이나 질문은 하지 말라거나, 아동들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언제나 정확한 전후관계(context)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톰킨스(Tompkins, 2002)도 ‘청소년 대상 인터뷰 지침(Guidelines for interviewing juveniles)’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인터뷰하는 목적과 함께 기자와 인터뷰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이의 정확한 정보 교환, 그리고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기 질문들과 여러 가지 고려할 대안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칠곡 아동폭행 사망 사건에서 기자들이 무분별한 취재로 피해자 언니 등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자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이 기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들이 이 같은 법률적 제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들의 취재나 보도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쉽게 상처 받고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자들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톰킨스(Tompkins, 2002)는 언론인들에게 ‘아동을 인터뷰할 때의 황금률(Golden Rule for interviewing children)’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아이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하라 (Do unto other people’s kid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r kids).”

Note.

1.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자세한 내용은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9
2.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자세한 내용은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3. 미국 ‘언론인협회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의 ‘윤리규정 (Code of Ethics)’.
자세한 내용은 <http://www.spj.org/ethicscode.asp> 참조

4. 영국 ‘언론고충위원회 (Press Complaints Commission)’의 ‘편집인 직업규약 (Editors’ Code of Practice).’ 자세한 내용은 <http://www.pcc.org.uk/cop/practice.html> 참조
5. 캐나다의 ‘기자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의 ‘윤리적 언론 원칙 (Principles of Ethical Journalism)’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caj.ca/principles-for-ethical-journalism/> 참조
6. 캐나다의 ‘기자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의 ‘윤리지침 (Ethical guidelines).’ 자세한 내용은 <http://www.caj.ca/ethics-guidelines/> 참조
7. 덴마크의 ‘행동강령 (National Code of Conduct)’
자세한 내용은 http://ethicnet.uta.fi/denmark/the_national_code_of_conduct 참조
8.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의 아동대상 “보도지침 (Reporting guidelines)”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icef.org/media/media_tools_guidelines.html 참조

제 IV 장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의 지침

1. 윤리지침: 피해와 혜택
2. 윤리지침: 사전 동의
3. 윤리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4. 윤리지침: 지불과 보상
5. 연구자 지원
6. 연구착수(Getting Started)

제 IV 장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의 지침

1. 윤리지침: 피해와 혜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연구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지의 여부, 아동의 참여 필요성과 아동을 어떤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시켜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연구 과정의 착수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 잠재적 피해 및 혜택의 관점에서 연구 참여가 아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 연구자들은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잠재적 피해와 혜택을 평가해야 한다.
- 피해는 정성적 연구이든 정량적 연구이든 발생할 수 있다.
- 연구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위험 평가 또는 계획 수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동이나 기타 참여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연구자는 기민한 대응과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의뢰를 요한다.
- 문화적 기대치와 국제 인권에 부합하는 프로토콜의 개발에는 현지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 피해와 혜택의 윤리 규범은 데이터 수집 이후에도 관련이 있다.
- 연구는 성별, 민족, 장애, 연령, 언어, 지리적 위치나 여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특성에 의거하여 차별 없이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
- 신뢰할 수 없는 설계나 부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은 비윤리적이다.
- 성인과 아동간의 힘의 차이는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이다.

- 위험의 예측 가능성은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아동의 연구 참여에 있어 차별이나 편견은 사회와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의 결과에 기인할 수 있다.
- 온라인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소외를 심화하거나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표 IV-1 피해와 혜택과 관련하여 UNCRC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지침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

- 이 연구가 새로운 지식에 기여할 것인가?
- 얻고자 하는 정보를 달리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 아동의 연구 참여가 필수적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가(아동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아동을 대신하여 성인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제외)?
- 연구에서 아동의 참여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 최대한 현지 지식을 입수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비용, 시간, 직원, 설비 등)은 무엇이며, 바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자원의 입수/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연구 프로젝트를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확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가?

연구자 자신이 아동을 대하기에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는가?

- 참여시키고자 하는 아동에 관한 무엇을 알고 있는가?
- 아동과 그들의 삶에 관하여 파악해야 할 내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량(기술 및 대인 관계)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동과의 대화에 어떤 경험이 있는가? 아동 발달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 자신과 아동 간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 어떤 방식으로 이 연구에 모든 아동을 포함시킬 것인가?
- 소외 아동/손질이 미치지 않는 아동을 파악하여 연구에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아동을 연구에 포함시킬 의사가 아니라면, 아동을 배제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 아동에 대한 가능한 위험이 있는가?

- 연구 조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야기되는 위험이 있는가?
-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떤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가?
- 특정 환경으로 인해 매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아동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필요 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전문가 자원 및 서비스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아동이 위해 또는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이러한 조치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아동 학대 보고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아동에게 따를 수 있는 어떤 오명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연구 진행/완료 후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나 정책을 개발/이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 또는 정책이 있는가?
- 아동의 평상시 행동을 잘 알고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알려진 누군가의 면담 후 점검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아동이 고충을 받거나 동요할 경우 어떻게 아동에게 대응할 것인가?

- 아동의 고충에 대응한 경험/기량이 있는가?
- 연구 팀원들에게 어떤 감독이나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고충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아동의 문제나 우려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2. 윤리지침: 사전 동의

부모/보호자 및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연구 참여자의 존엄성, 의사 표명 능력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사전 동의는 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제고할 것을 요하는 명시적인 합의이다. 이는 자발적이고 협의 가능해야 하며, 연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이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모/보호자 및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존엄성, 의사 표명 능력과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 연구자, 아동 참여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 3인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중 연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윤리적 복잡성이 있다.
 - 현지 자문은 연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아동의 연구 참여에 관하여 누구를 접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 아동에게는 그 연령, 역량, 상황 및 발달하는 능력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동의를 구하는 순서와 대상은 아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동의는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협의 가능하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만큼 정보에 입각한 거부도 중요하다.
 - 온라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는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복잡성이 있다.
 - 연구자는 개념을 매우 간단한 용어로 전환하여 이해를 촉진하고 강화해야 한다.
 - 성인과 아동 간의 권력관계 때문에 아동의 동의가 자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 문화적 고려사항은 아동의 자율성과 연구 참여 또는 거부 의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다.
 - 동의는 높은 기대치와 혜택적인 결과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집단 환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참여 거부 또는 동의 철회 결정이 중요하다
 - 연구자들은 행동 및 언어적 거부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윤리적 연구 수행에 관한 결정은 동의가 필요한 대상을 비롯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 개인의 동의 능력에 주안점을 둬으로써 동의의 사회적 측면을 간과하는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부모와 여타 성인에게는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하면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일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감시할 수 있으며 항상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 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에 따라 아동의 연구 참여를 결정해야 하며 아동 옹호자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연구를 위장하는 것은 존중, 공정성 및 정직의 윤리 규범에 배치된다.
 - 해명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연구에 극히 중요하지만, 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 연구자들이 아동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동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표 IV-2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UNCRC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지침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하여 상의해야 할 그 외 다른 대상은 누구인가?

- 참여 아동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의 어떤 성인과 만나야 하는가?
- 아동의 참여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아동의 참여 동의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아동이 동의를 고려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 아동에게 연구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아동이 참여를 강요 받지 않도록 어떤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동이 계속 동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장기 또는 종단적 연구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는 무엇이며, 어느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가?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 아동에게 서면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 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 질문이나 문제가(현재 및 향후에) 있을 경우, 아동/부모를 상담할 수 있는 전담자가 있는가?

아동의 기여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

- 개별 아동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이러한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동의 동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아동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아동의 이해를 어떻게 도울 것이며 모든 위험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아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철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아동이 언제든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어떻게 아동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 아동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장기 프로젝트의 여러 단계에서 아동의 거부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3. 윤리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

연구자는 연구 참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유지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아동이 공개 또는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대상에 관한 프라이버시
- 관계자들에게 정보 교환의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정보 수집/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과정의 프라이버시
- 간행물 및 조사결과의 전파에서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프라이버시

연구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사항들을 유념해야한다:

-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유지의 존중에는 연구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인식과 민감성이 요구된다.
-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은 아동이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 개인정보 보호는 아동으로부터 위탁 받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 데이터 수집 위치와 방법은 참여자의 프라이버시와 수집된 연구 정보의 기밀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 개인정보 보호에는 연구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및 여타 조사결과의 전파 수단에서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성의 보장이 포함된다.
- 아동, 다른 사람, 주요 지형지물 및 여타 식별 가능한 특징이 포함된 사진과 아동의 직접 진술을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일부 문화적 맥락에서는 프라이버시가 가정과 공동체 내의 일반적인 경험이 아닐 수 있으며 연구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의도적으로나 부주의하게 가족, 친구 또는 아동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아동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 선정에 관여해야 한다.
- 아동의 의사와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원칙적으로 지침을 제공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간단하지 않고 부적절할 수 있다.

- 초점 집단 상담 상황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 권리의 존중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 원칙적으로 연구자들은 자신의 우려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동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안전하며 효과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의 성인이 되는 시기에 관한 법률과 관습법을 숙지해야 한다.
- 여러 상황 간의 일관성 결여는 연구자들이 데이터 수집에 착수하기 전에 신고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연구의 필요성에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기술 매체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신기술을 이용하는 연구는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공동체(온라인 커뮤니티 포함)와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기밀유지 위반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표 IV-3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UNCRC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지침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 연구 환경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부모 또는 대리인이 배척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 이유는? 이는 아동의 연구 참여 또는 아동이 공유하는 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아동 혼자만의 면담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면담자의 성별과 인원수가 면담 대상 아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이유는?

연구 과정에서 야기되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 기밀유지를 위반해야 하는 상황을 아동(부모)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아동이 위해 또는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이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아동에게 전달할 것이며 아동의 의견을 고려할 것인가?
- 이러한 조치에 관하여 그 외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연구 조사결과를 안전하게 배포할 것인가?

- 어떤 방법으로 아동, 가족 및 공동체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파기할 것인가?

- 안전과 안전한 데이터 저장을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모든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는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연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추가 전략이 있는가?

-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에 관한 명시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행하면 연구 직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연구 직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4. 윤리지침: 지불과 보상

연구 참여자는 모든 비용을 적절하게 상환 받아야 하고, 노력, 시간 또는 수익 손실을 보상받아야 하며,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잠재적으로 압력, 강요, 뇌물, 설득, 통제가 될 수 있거나 경제적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유발하는 지불은 지양해야 한다. 공정성, 혜택 및 존중의 지침은 연구 참여자들이 적절한 인정을 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참여에 대한 공평한 보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연구 맥락에서 모든 금전적인 거래는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기존에 작용하는 힘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지불 또는 보상의 성격을 결정할 때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세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부 경우에는,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이 더 적절할 수 있다.
-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잠재적 참여자들이 강요, 착취 및 뇌물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불(특히 인센티브)에 관한 윤리적 우려가 심화된다.

아동의 참여를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혹은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어떤 식으로 아동의 참여가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아동의 여타 책임과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 아동이나 부모가 여하한 금전적 보상이나 연구 참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가?
-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 지불이 있는가?
- 지불은 어떤 형태(예: 금전, 음식, 선물, 교재)를 취하며 누가(아동, 부모, 공동체) 사례를 받게 되는가?
- 지불에 관한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동의 과정에 공개할 것인가, 아동이 참여에 동의한 후 또는 연구 종료 후에 공개할 것인가?
-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지불에는 연구 비용이 고려되었는가?

5. 연구자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여타 관계자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의 비판적인 검토에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적절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 교육과 전문성 개발 기회를 통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윤리 검토 위원회는 연구자들의 윤리적 연구 수행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거버넌스 및 검토 메커니즘은 윤리적 연구 수행을 보장할 수 없는 반면에, 윤리 지침과 공식적인 윤리 검토 프로세스는 연구자 및 참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데이터의 품질은 형성되는 관계의 질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된다.
- 윤리 검토 위원회의 유용성은 한편으로 연구에 대한 윤리적 정밀 조사 유지와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성가신 관료주의적 절차의 지양 사이에 명백한 긴장관계가 있는 논쟁과 토론의 원천이라는 점에 있다.
- 최근의 연구에는 흔히 협력 제휴가 수반되므로, 다수의 지역 집단과 여러 윤리 검토 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다.

6. 연구 착수(Getting Started)

이 단계(getting started)는 연구자, 연구 팀원,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연구를 계획하고 착수할 때 지역적인 맥락에서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연구 단계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이며 유용한 실무 기반의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연구 착수는 단지 해야 할 일과 금지사항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며 ERIC 개론에 나와 있는 여타 중요한 맥락상의 정보와 별개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 착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IV-5 연구 착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계획 및 준비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

<아동>

- 1.1 이 연구가 아동에게 중요한가?
- 1.2 이 연구에 아동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 1.3 연구 진행 중에 아동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1.4 아동의 참여 동의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연구자>

- 1.5 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검토했는가?
- 1.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인 자신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 1.7 아동의 연구 참여를 그 외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 1.8 연구에서 부모(또는 보호자)의 역할을 검토했는가?
- 1.9 연구에 관한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의 우려는 무엇인가?
- 1.10 참여 아동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 1.11 윤리 승인

연구 설계 및 방법

<아동>

- 2.1 아동이 연구 설계에 참여하는가?
- 2.2 데이터 수집을 비롯한 연구 방법론에 모든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가?

2.3 연구 방법이 아동에게 적절한가?

〈연구자〉

2.4 모든 관련 직원이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데이터 수집

3.1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3.2 어떤 식으로 아동의 참여를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3.3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3.4 연구 과정에서 야기되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우려에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3.5 아동의 기여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

〈연구자〉

3.6 아동의 동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7 아동이 고충을 받거나 동요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8 자신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분석, 저술 및 전달

4.1 아동이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는가?

4.2 연구 조사결과를 어떤 식으로 아동, 여타 이해관계자 및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 전달할 것인가?

4.3 어떤 방법으로 연구 조사결과를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가?

〈연구자〉

4.4 연구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4.5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의 반환, 안전한 저장 및 파기를 보장할 것인가?

제 V 장



국내 사례연구

제 V 장

국내 사례연구⁵⁾

사례 1) 탈북 청소년 면담연구에서의 비밀 보장의 문제

연구배경

한국에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입국한 탈북주민들이 있고, 그 중에는 학령기 아동인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발음도 남한 사람들과 약간 다르고 남한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일반학생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4배 이상 된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할 경우 매우 피폐한 생활을 할 것임은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0여개의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학력미인정 시설이다.

학력미인정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설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나 교육부 등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재정지원의 책무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진단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일을 맡아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의 청소년들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충격적 사실들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해 갈등을 겪었다.

윤리적 문제

연구자는 기숙형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에 찾아갔다. 이 시설에서 한 길잡이 교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 시설의 여학생 중 한 명은 교육시설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5) 연구자와 피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저자 및 사례의 근간이 된 연구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했다. 숙식이 제공되는데 왜 어린 나이에 돈을 벌러 다니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북한에 여동생을 두고 왔고, 그 여동생을 탈북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게는 4백만원에서 많게는 6백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 국경선 부근에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람들을 빼오는 중개인(브로커)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라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의 국경선 인근에서는 남한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고 실제로 통화를 한다고 한다. 또한 탈북 청소년뿐만 아니라 탈북 주민 중에는 캐나다나 미국, 영국으로 다시 이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국에 입국하면서 여권을 몰래 폐기하고 망명자로 입국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 갈등했다.

선택

물론 연구자는 연구자라는 객관적 입장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들은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다행히도 외국 망명 사례는 내가 면담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지 몇 달 후에 TV방송 르브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되었다. 연구자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내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이 기억난다. 다른 사례들도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 느꼈다. 물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자칫 그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연구자는 아직도 이러한 일종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럽다. 면담내용을 참고할 뿐 달리 활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갈등은 심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심리적 상태를 야기한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면담시 들은 비밀스러운 내용을 사회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 만약 비밀스러운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피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개인신상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동의없이 공개할 수 있는가?

사례 2) 대안학교 여학생의 비밀

연구배경

한국에는 매년 재적생의 약 1%, 인원수로는 약 6만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한다. 복교생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12년간 누적된 학업중단자는 28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중 절반이 여학생이다. 남학생들은 학업중단 후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여학생들은 취약하다. 따라서 남학생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우선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대안학교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이러한 대안학교에는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들도 꽤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이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연구해 왔다. 그 와중에 연구자는 한 대안학교에서 한 여학생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은 상담실에서 진행했다. 학교를 왜 그만 두었냐고 물어보았다. 여학생은 담담히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갔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한테서... 흑흑흑.” 여학생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눈물까지 떨어뜨렸다. 연구자는 대략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몹쓸 일을 당했구나.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저런 얘기로 위로를 하고 면담을 마쳤다. 다음 날 다시 그 대안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일을 마치고 가려하는데 대안학교의 상근교사가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어제 상담할 때 무슨 얘기를 하더냐고 물었다. 연구자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연구자로서 연구과정이나 면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제3자에게 알려 줄 수 없다는 ‘비밀준수의 원칙’을 가르칠 태세로 말했다. 그러자 그 교사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시골에 있는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그 옆집에 사는 어떤 오빠한테서 당했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연구자는 다시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긴한데 오빠가 아닌데요”라고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되물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연극장애라고. 정확히는 연극성 인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연극적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정심을 유발하여 내 편으로는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다. 딱 내가 당한 경우였다.

윤리적 문제

두 가지 질문이 마음 속에 생겨났다. 그 연구자는 아무리 그 선생님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과정에서 들은 비밀을 털어놓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자는 그 가해자가 다를지 몰라도 실제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단지 연극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얘기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면담과정에서 들은 비밀스러운 얘기를 제3자가 이미 알고 물어보았을 때 연구자는 그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그 질문이 유도질문일 수도 있고, 얘기의 줄거리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자칫 이것이 내담자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했다.

또한 연극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말하는 모든 얘기가 다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연구자가 피면담자의 심리적 장애 등의 배경을 알고 면담을 하면 자칫 피면담자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불신하고 오해하지 않게 될까 의문스럽다. 그렇다고 피면담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일일이 진위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연구자는 피면담자의 진술내용을 제3자를 통해 여과시켜 들어야 하는 것일까?

선택

○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정보 공유

첫 번째 갈등은 연구를 위한 면담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면담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그 제3자가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가 문제였다. 연구자는 대안학교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심리적 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배경 부분에서 말했듯이 대안학교에는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 오기도 한다. 연극장애를 가진 학생의 말 한 마디로 인해 학생간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그 아이의 장애수준에 대해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미 기본적 비밀사항을 알고 그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유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피면담자의 배경 확인

두 번째 갈등은 피면담자의 질병이나 장애 등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알고 면담을 하는

것이 자칫 그 면담내용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처럼 피면담자가 연극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면담을 하기 시작했다면 연구자는 그 여학생의 진술내용을 모두 거짓말로 여겼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럼 사실상 면담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연구자는 이 사례를 겪으면서 한 가지의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피면담자의 배경을 제3자에게 듣고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편견에 의한 인지적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배경을 전혀 모른 채로 면담을 하는 경우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중적 면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다중적 면담이란 두 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먼저 1차 면담에서는 배경을 모른 상태에서 피면담자와 면담을 한다. 2차 면담 전에는 피면담자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나서 2차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면담을 함에 있어,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보는 교사와 면담자 간에 어떤 수준까지 공유할 수 있는가?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 질병이나 장애 등 피면담자의 배경을 알고 면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피면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가?

사례 3) 아동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연구가 그들의 삶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연구배경

본 연구자는 아동이 가진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태도 및 신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슬픔 및 분노 정서에 대한 경험, 생각, 느낌에 대해 질문하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43명에게 실시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Katz와 Windecker-Nelson(2002)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상위정서인터뷰(CMEI: Child and Adolescent Meta-Emotion)로 미국에서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 및 아동의 정서적 유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되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번안하여 사용된 도구이다. 연구자가 아동에게 일대일로 “네가 슬픔을 경험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래?”, “네가 화가 났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니?” 등의 반구조화 된 질문들로 약 20~30분 정도 인터뷰를 하며,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전 내용을 녹음하여 추후 분석하는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윤리적 문제

설문지법과 비교하였을 때 인터뷰법은 아동의 정서적 삶과 그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를 측정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각자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는 모두 다르며 표현 및 조절하는 수준 또한 매우 주관적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의 깊이와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하는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 보았을 때야 비로소 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삶에 대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목적이 가지는 한계는 각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적 삶에 대한 이해에서 그친다는 데 있다. 자신이 경험한 정서 관련 에피소드에 대해 언어화하여 풀어놓을 때 면접자는 유도된 연구 결과를 막기 위해 질문 외 개인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며 중립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훈련받는다. 이와 더불어 슬픔 및 분노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만한 정도의 반응이 나왔을 때에도 어떠한 공감이나 개입 또한 제한된다.

연구자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면접자의 태도는 아동의 자아강도에 따라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지적 사고 내면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제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억압하고 있었던 슬픔이나 분노가 건들여져 인터뷰 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관적 고통감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를 통해 아동 각자의 정서적 삶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로 인하여 아동이 경험하게 될 현상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일까? 아동과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지만 아동이 인터뷰 내에서 드러낸 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부모 및 교사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연구자에게 있는가? 이는 연구자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윤리적 측면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선택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어머니 및 아동을 모집하였다. 가정통신문에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추후 분석 결과지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이는 사전에 아동 및 부모에게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 해당한다. 가정통신문에는 종이를 절취하여 연구 참여 신청에 대한 부모 및 아동의 서명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담임교사를 통해 수거된 신청지를 연구자가 받아 신청자에 한해 연락하였다.
- 인터뷰를 위한 아동과의 만남에서는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중에는 연구의 중립성을 위해 면접자가 질문 외 다른 반응은 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를 해주었다.
- 인터뷰에 따른 반응을 통해 아동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정서의 강도가 높고 주관적 고통감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터뷰 후에 정서조절 방식에 대한 간략한 팁 제시 또는 대인관계 갈등에서의 해결점을 함께 찾아보려는 시간들을 확보하여 활용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무료 개인상담을 안내·권유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사용하고 있는 정서회복 전략 등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이에 필요한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를 안내하는 결과지를 모든 참가자 가정에 발송하였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연구 참여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될 현상들에 대해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시 충분히 안내하였는가?
-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아동의 현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비밀보장을 할 것인가?
- 아동이 연구 참여로 인해 경험하게 된 주관적 고통감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 사후 개입에 대한 연구자의 경제적·시간적 책임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져할 것인가?
(추후 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례 4) 아동·청소년 대상 외상 사건에 관한 연구 시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성: 떠올린 외상 경험으로 인한 불쾌감 및 주관적 고통감에 대한 사후개입의 필요성

연구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위협이 될 만한 외상사건이 잦아지면서 ‘외상’ 또는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적 외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외상 또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송승훈(2007)이 사용한 ‘외상 경험 질문지’를 사용하는데, 본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매우 비극적이고 극심한 충격적 사건을 16가지 범주(사고 및 상해, 자연재해, 구타 폭행 강도 등의 범죄 피해, 성추행 및 성폭력, 본인의 심각한 신체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대인관계 파탄, 적응의 어려움, 부모의 이혼 및 별거, 학업 및 과업 문제, 배신 충격, 재정적 어려움, 실직 구직의 실패, 학대, 기타) 내에서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중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 선택한 후 그 사건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문항내용으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감은 어느 수준이었는지, 현재 그 사건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감의 수준은 어떠한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 본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900명에게 본 설문지를 요청하여 수거하였다.

윤리적 문제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외상사건은 그 시기 발달적 과업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의 외상 또는 외상 후 성장에 관해 그 개입방안을 밝히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본 연구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 외 연구과정 중

연구주제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불쾌한 감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해당 외상사건에 대해 충분히 심리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감을 재경험하게 하여 일상 기능에의 어려움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현재 느끼는 주관적 고통감을 살펴보면, 보통 또는 고통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64%에 해당하였으나 '약간 고통스럽다'가 23.3%, '고통스럽다'가 9.0%, '매우 고통스럽다'가 3.8%로 나온 것으로 보아 연구대상 청소년의 약 36%는 본 설문지를 통해 외상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극심한 고통감을 여전히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설문 응답으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재경험하게 된 청소년에 대해 연구자의 사후개입 및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선택

연구 참여로 인해 외상 사건을 재경험한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연구절차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을 모집할 때 본 연구 참여로 인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교사(학교를 통해 모집할 경우), 학부모, 청소년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실시한다. (또는 일괄적인 설문지 배부 및 수거를 할 경우에는 설문지 첫 장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설문 수거 후 떠올린 외상 경험에 대한 현재 고통감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사후 개입을 위해 마련된 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청소년 및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다. 다만 부모의 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청소년이 응답한 설문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서약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의 문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로가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해 나누고 그에 따른 감정을 타당화 할 수 있는 단기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또 다른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파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외, 경험한 외상 사건 유형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들 및 대처방안, 치료센터에

대해 설명된 교육책자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연구 참여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불쾌감 및 주관적 고통감에 대하여 교사, 부모, 청소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 연구 참여로 인해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 연구 참여로 인해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주관적 고통감에 대해 연구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는가?
- 고통감 수준에 따른 사후 개입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제공할 것인가?
- 부모에게 사후개입의 필요성을 알릴 때 청소년의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사례 5) 조사 및 연구 중 우연히 발견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연구배경

많은 발달심리학 및 아동·청소년학계 전문가들은 인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동·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이들의 적응 수준을 밝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개입방식 및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패널연구,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들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정신건강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등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연구 참여자의 적응수준은 넓은 스펙트럼 상의 한 곳에 위치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 부적응 지표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발견되는 것은 크게 놀라울만한 결과는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스펙트럼이 분포되어 있는 표본일수록 연구자의 가설 검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부적응

지표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경우, 이들의 상태를 알게 된 연구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윤리적 문제

최근 들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활발한 연구 및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의 심각성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연구자의 책임은 쉽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에선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는 진단용 검사지가 아닌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임상적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예방 및 개입방향,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까지 만으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윤리적 이슈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 같다. 먼저 논의해 볼 사항은, 우리의 연구 결과로 인해 연구자가 대상자의 현 상태를 알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유능성이나 학교생활 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인터넷 중독 등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는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의 적응 수준인지를 알지 못 한다. 그러나 연구 후에는 참여자의 현 상태를 알게 되었으므로 논문에서 예방 및 치료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이상으로 최소한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는 검사 결과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연구목적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조기개입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바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시 실시하였던 문항 응답에 대한 결과지를 배부하는 것 이상으로 당장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과가 나타난 대상자의 경우 연구자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분석하고자하는 연구목적으로 가지고 아동에게 자살사고 수준에 대해 묻는 설문을 활용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연구 결과,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서의

자살사고 수준이 나타나겠지만 이 중 빈도, 구체적인 자살계획, 기존 자살 시도 경험 등 심각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이 발견된다면, 이들에게는 당장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간과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는 물론 부모에게 결과를 알릴 때 범하게 되는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한 이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경우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극단적인 예시를 제시하였지만 어떠한 종류의 고위험군이 발견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연구자가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택

연구자는 연구주제 및 조사변인과 관련되어 드러날 수 있는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도움/개입을 제공할 것인지 연구 설계 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독자가 여러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방안을 하나의 예시로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다면적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 전 학생들에게 검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검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원할 경우 교내 상담소에서 검사에 대한 해석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상담소에서 해석상담의 요청전화가 갈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검사 후 개인의 검사결과지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검사 해석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는 유인물을 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해석 상담을 신청한 학생 및 검사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추가적 연락을 통해 현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1회 약 50분 간 심리상담사가 상담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자 원할 경우 교내 무료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안내해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위 경우처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연구자가 적극적인 책임감을 갖는 태도는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개인 연구자의 경우에는 사설 상담소 또는 치료센터와 연계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로 아동·청소년 및 부모의 접근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이에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부처 주관으로 각 시마다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이월센터(인터넷중독상담)나 아동의 해당 학교 상담실 등 무료 상담 및 치료센터를 소개하고 동의를 구한 후 그 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설문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의 한계를 아동·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한 응답의 진솔성을 유지하도록 참여자들을 고무시키는 것과 비밀보장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 진단용 검사가 아닌 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도구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참여자의 현 상태를 안내할 것인가?
-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연구자는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례 6) 아동을 연구대상에서 연구주체로

연구배경

전통적으로 연구에 누가 참여하고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었다. 아동은 관찰대상이었으며 연구에서 아동의 목소리 비중보다는 연구자의 목소리 비중이 더 컸다. 이 때문에 아동의 목소리가 그대로 연구결과에 반영되기 보다는 연구자 필요에 의해 혹은 연구자의 편향된 연구가설에 의해 그 결과가 왜곡되기도 하여 최근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달을 조사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상의 문제를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에게로 귀속시키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발달이나 적응을 일반가정 아동들의 발달이나 적응과 비교함으로써 연구 설계에서부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발달이나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결핍 관점을 더욱 강화한다(이 부미, 2013). 연구자의 필요나 편향된 연구가설에 의해 아동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보도되는 일이 방지하고, 연구에서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지위를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주체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문제

아동 대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복리증진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이미지나 아동 가족의 이미지를 연구자의 편향된 가설이나 연구 설계, 편의나 필요에 의해 왜곡될 여지가 있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연구에서 아동이 관찰대상으로 전략함으로써 아동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보듯이, 몇몇 연구자들이 다문화 가정 아동을 일반 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찾는 연구를 해왔다. 이들 연구는 일반 가정 아동은 표준(standard)화 되고 이와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서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찾음으로써 처음부터 편향된 가설에 근거한다. 그리고 편향된 가설과 연구 설계에 의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결핍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아동 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는 어떤 조건을 갖춘 연구인가? 아동을 연구 대상(수단)으로 여기기보다 연구자의 해석과 이해를 돕는 연구 참여자가 될 가능성은 있는가?

선택

아동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관찰, 포커스 그룹, 소집단 토의 면담과 같은 다양한 질적연구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술작품, 사진, 노래, 이야기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안혜준, 2008). 아동과 면담할 때 짝을 이루거나 소집단으로 하면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회의 면담으로 끝나기보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아동의 의미 구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혜준(2008)은 아동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문서화된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아동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기 어려울 때는 특정 표시나 기호를 쓰도록 하여 긍정적인 동의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Wee & Anthamatten(2014)와 안혜준(2008)은 아동중심 연구의 사례로 아동들이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동이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아동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사진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사진은 연구자와 아동간의 소통의 도구가 된다. 또한 사진은 아동의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지원해 줄 좋은 도구가 된다. 연구자의 해석과 분석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아동에게 물어보아 연구자의 해석과 분석에도 아동이 참여할 수 있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아동 대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복리 증진이다. 아동 복리 증진에 기여할 연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 연구자의 편향된 가설이나 연구설계, 필요나 편의에 의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를 방지할 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에서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안혜준(2008)은, 아동의 연구참여에 대한 근거로서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아동권리 협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에 의하면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안혜준, 2008, p. 102, 재인용)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과 성숙도를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례 7) 아동·청소년 관련 실험연구 세팅에서의 문제점

연구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실험연구는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실험집단에 대해 처치를 제공한 후, 특정 요소의 발달 정도를 살펴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는 한 부모 가정 아동들의 자기 존중감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에 자기 존중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같은 물리적 환경에 놓여있는 통제집단 아동에게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윤리적 고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윤리적 문제

○ 통제집단 아동의 보상 문제

실험연구를 계획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세팅에서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윤리적 이슈는 통제집단 아동의 보상 문제이다. 같은 조건(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집단, 폭력 피해 아동 집단, 높은 우울 수준을 가진 아동 집단, 약물 중독 집단 등)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에 필요에 의해 나누어진 통제집단의 아동들은 실험집단 아동과 달리 갖고 있는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치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자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물리적 문제, 혹은 아동의 의지에 의한 문제가 아닌 오직 연구자가 설계한 세팅에서 아동이 피동적으로 겪게 되는 경우이므로 통제집단 아동에 대한 연구자의 고민이 필요하다.

○ 연구 참여에 대한 아동의 동의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이슈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참여하는 아동을 대신한 부모의 동의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둘째, 통제집단 아동의 동의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 참여 동의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의 의사를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을 자율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해 타자화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를 통해 아동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의 대상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민감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또한 연구자가 프로그램 처치가 이루어지는 실험집단 아동만을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으로 인식하는 좁은 판단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 대상 선정 문제에서부터 연구자가 윤리적 이슈에 민감함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 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선택

- 통제집단 아동의 보상 문제에서 연구자들은 실험 종료 후 통제집단 아동에게 실험집단의 투입했던 처치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여 제공하거나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로 조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아예 윤리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 나은 형태의 보상이지만, 이러한 보상 방법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연구 종료 후 통제 집단 아동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실험집단에게 제공했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제공하거나, 이루어졌던 각종 검사에 대한 정보 제공, 추후 상담 등 기존 방법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보상에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중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발견의 문제는 연구자가 각 연구마다 임의로 결정하거나, 관습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매뉴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물론 기준을 정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문제나 문제 아동의 발견 시 대처 등은 아동의 기본 인권 및 그들을 보호할 사회적인 책무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이므로 최소한의 매뉴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인 아동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통제 집단 유아의 보상 문제는 연구 설계시부터 계획되어 있는가?
- 아동이 참여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자는 아동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였는가?
- 검사 시 발견되는 문제 아동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였는가?

사례 8)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관련 연구와 연구윤리

연구배경

보호를 받아야 시기의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에 하나로 학계에서도 이를 보호,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가정폭력,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SNS 등을 이용한 폭력 행사, 사이버bullying 등 그 종류와 대처방안 다양해지고 있으며,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 연구는 폭력은 단순히 일부 문제있는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폭력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을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윤리적 문제

○ 비밀 보장의 문제

아동·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연구 수행에서 비밀 보장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비밀보장 원칙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비밀로 다루어질때, 연구자는 부모의 알 권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연구 참여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보다 더 크게 다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즉 가족중심 이데올로기의 지배가 강력하여 적용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연구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온다.

또한, 연구 중에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언제, 어느 정도로, 어떤 내용의 정보까지 보장되고, 공유되어야 하는지 이슈에 부딪치게 된다.

○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아동 폭력 사실의 신고 문제

미국의 경우 아동 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와 동시에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고와 동시에 해당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참여를 포기하거나, 관련 가족, 학교, 또래 등이 법적인 조치를 받는 등의 이유로 연구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동 폭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로 공식적이고 적절한 절차, 혹은 감독기관의 존재가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있다.

○ 가정폭력 관련 연구에서 부모의 권한 문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우 문제는 대부분 가족, 특히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가정폭력에 대한 치유 혹은 해결책은 가족의 기능이 더 강화될 때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폭력 관련 연구에서 아동의 필요는 부모의 요구에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아동의 권리보다 부모의 법적 권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표집 과정에서부터 문제에 봉착한다. 가정폭력이 나타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부모가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부모의 폭력 발생이 발견 되었을 때, 부모는 친권을 주장하며 어떠한 조치도 거절하여 아동을 계속 폭력에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택과 판단이 어떠해야 할까?

선택

아동·청소년은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적,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연구 역시 보호, 예방을 위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로 시작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과 선택이 아동·청소년, 그와 관련된 가족, 학교 등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연구에서보다 윤리적인 사안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윤리지침 및 감독기관의 필요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동시에 연구자의 윤리 의식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연구자에게 연구 기한, 연구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아동 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다룰 때, 혹은 아동의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될 순간에는 과감히 연구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더라도, 아동이 제공받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수준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연구가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일 경우에는 연구자의 의지만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 단위의 연구, 혹은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높은 윤리적 수준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자의 수준이 높더라도 관련 제도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윤리지침, 그리고 해당 감독기관의 존재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망중한 역할이 필요하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아동 폭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인가?
- 아동 폭력과 관련된 연구에서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 신고가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사례 9)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위한 연구 대상 선정

연구배경

청소년의 비행이나 폭력 등 문제행동과 관련한 이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이 되는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해당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대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상의 경제적 여건, 가정환경,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개인의 경험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각 대상별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 요인을 발견하여 해당 요인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정의하여, 해당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는, 해당 특성 요인의 수준이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대상이 청소년 문제에 관련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특성과 관련한 한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분노, 공격성, 우울, 자기통제 등의 변인을 측정하여 대상별로 예측되는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 및 방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을 확인하고,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 모형을 구조화 하고자 하였다.

윤리적 문제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대상의 현재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학교폭력, 비행 등 문제와 관련한 특정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때,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의 대상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 개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나 법령, 사회적인 통념 등 타당한 근거로 간주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윤리의 측면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연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대한 탐색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연구 대상을 정의하는 경우,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연구 대상의 특성 요인 또한 연구자의 관점의 영향을 받아 편향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해당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 유무와 빈도, 수준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가해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와 피해 경험 유무만으로 구분해 내기 어렵다.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특성과 피해자 특성이 각각 독립적인 요인으로 정의되거나 분류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연구 대상을 단순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이 가지는 독립적인 특성 요인을 구분할 때 연구자가 가지는 편견이나 편향된 관점에 따라 연구 대상의 특성이 설명될 우려가 있다.

선택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변인간의 상호작용 모형을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학교폭력 가해, 피해, 방관 경험과 관련한 변인을 측정함에 있어 학교폭력 가해/피해척도와 방관자를 변별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실제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방관자 모두 학교폭력 가해, 피해나 방관의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별 특성과 관련한 핵심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연구 대상을 분류해 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을 학급 단위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급 구성원 전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방관자로 명확하게 정의 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분류하는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대상자가 가지는 성격적인 특성과 관련한 편견을 제거하고, 각각의 대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상별 특성을 정리 하여, 연구 대상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특성을 구별해 내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연구 대상자 전체가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중의 한가지의 분류에 무조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간주 될 우려가 있다. 즉, 실제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 방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조사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분석 과정에서 각각의 연구 대상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이 세 가지 대상자 유형 중에서 어느 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연구 대상의 유무나 이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변화나 오차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는가?
- 연구 대상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따른 연구 결과의 변화나 오차를 고려하였는가?
- 연구 대상의 특성이 연구자의 편향적인 관점에 따라 제시되지 않았는가?

사례 1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의 해석과 서술의 충실성

연구배경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공감적이고 해석적으로 접근하여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서로 만나 대화하고 공감하고 조율하며, 각각의 존재가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의 자료가 된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행동과 내적 경험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어로 묘사하고, 실제 생활환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깊이 있는 현상을 조사할 때 주로 사용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몇 가지의 사건에 대하여 면밀하고 자세한 대화와 이에 대한 기술을 통해 사례들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 및 사례에 따른 주제별 분석을 하게 되며 사례의 의미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근거하여 컴퓨터에 보호중인 가출 청소년이 가출로 인해 경험한 개인적, 가족적, 학교·또래,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개입방안과 사회 보호 안전망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Creswell(1998)이 제시한 사례 연구방법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가출경험이라는 이슈를 관찰, 면접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각각의 사례 참여자들의 이슈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 공통점, 차이점을 도출하여 사례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면접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화의 녹취록을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를 정리, 분석, 서술하였다.

윤리적 문제

폭력, 범죄, 비행, 가출 등 청소년의 문제와 관련한 사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설정과 연구자의 개입 수준에 관련한 윤리적인 이슈는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구 참여자 자신과 주변의 경험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한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낙인감이나 차별감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방된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경험과 사례들이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는 위와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내용과 결과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충실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자는 자신의 관점이 편협하거나 편향되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해야 한다. 이는 연구 내용의 허위나 위장 등의 요소를 배제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초점이 된다.

선택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청소년 가출의 정의와 유형, 실태

및 문제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각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요인을 다시 분류하여 청소년 가출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정리하여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자에게 연구의 목표를 설명하고, 대화의 주제와 내용, 녹취 여부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제가 가출이라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면접 전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 참여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대화 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공개될 우려와 관련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구 윤리의 측면에서 연구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다짐과 동의서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심층면접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사례별 분석에서는 가출과 관련한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사회 환경에서의 경험을 분석한 뒤 각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였으며, 각 연구 참여자의 사례를 논문에 제시한 뒤 연구자의 관점에서 파악 가능한 요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면접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사례 연구에 있어 절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연구윤리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참여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해석과 서술 부분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연구 결과의 편향이 우려되고 있다. 연구자는 각각의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과 함께 심층 면접과정에 참여하는 태도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일부 표현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적인 추측과 해석을 서술하고 있으며 추측과 해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멤버 체킹(member checking)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 참여자 A는 강한 어투와 냉정해 보이는 모습으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무표정하며 꼳꼳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마네킹 같은 경직된 느낌이고 **성인여성을 대하는 것 같았다.**

- **참여자 B는 노란색 머리와 뒤통이 누런 이는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눈동자가 풀린 듯한 모습은 약물 과다복용이 의심되어 보였다. 또한, 표정은 웃고는 있으나 조소하는듯 하였으며 혀가 조금 짧은 말투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

- 참여자 D는 면접 시 들어올 때부터 안절부절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손을 계속 움직이며 불안해하고, 눈치를 자주 보고 살아서인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지루해 하였다.
- 참여자 G는 의자 위로 올라가 앉고 몸을 비틀고 고개를 숙이고 지루해하면서 조급해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고 장난스러운 모습이었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가?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사회적 낙인감이나 차별감 등의 불편감을 느끼는 행동, 언행 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 연구 논문에 연구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면서, 타당한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되지 않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사례 11) 유아의 자발적 연구참여권과 연구참여 철회권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배경

연구자는 미국 소재 한글학교에서 유아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조사했다. 한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가 당시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당시 만 5세반 교사였으며 연구자에게 5명의 유아가 배정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5명 유아의 학부모님을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으며 연구참여 동의서를 통해 자녀의 연구참여 동의를 구했다.

일주일에 한번 진행되는 한글학교 프로그램에서 수업 중 유아들의 대화를 전자 녹음기를 녹음하였다. 녹음하기 전, 연구자는 유아들에게 왜 녹음기를 사용하는지 설명했으며 연구자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설명했다. 유아들의 동의하에 녹음기가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한 유아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유아의 어머니는 연구참여에 동의를 했으며 유아는 특별히 연구참여 철회에 대한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의

침묵은 연구 참여 철회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윤리적 문제

교사가 연구자이며 학부모로부터 연구참여 동의를 구할 경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연구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연구자일 때 연구와 수업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므로 연구자의 이익과 연구 참여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유아들의 반응을 현장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로서의 역할과 연구자로서의 이익이 상충될 때 교사는 두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윤리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수업 중 한 유아의 침묵은, 교사가 시연하는 수업에 그 유아가 흥미를 못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녹음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수 있다. 교사로서 연구를 포기할 것인가 연구자로서 수업을 강행하며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선택

교사가 연구자이며 유아가 연구참여자일 때,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접근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교사와 유아의 관계가 유어나 학부모의 자발적인 연구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학부모가 자녀의 연구참여를 동의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으며 IRB와 연구기관 연락처를 알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지했다. 교사 대신 제 3자가 학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도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금전적인 보상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전적인 보상 대신 한글학교 수업시간 이외에 유아들을 한두시간 더 데리고 놀거나 한글을 지도해주었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참여의사를 철회한 유아에게도 놀이와 한글학습을 제공하여 참여 철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교사가 연구자일 때 연구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그리고 연구자의 이익과 연구참여자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연구자의 이익이 교사의 역할이나 연구참여자의 이익보다 우선될 때 연구참여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언제나 연구자의 이익보다 교사의 역할이나 연구참

여자의 이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유아가 연구참여자이며 학부모로부터 연구참여 동의를 얻는 경우, 유아의 연구참여 의사를 충분히 얻지 못한채 연구가 시작될 수 있다. 때문에 유아의 연구참여 철회권이 중요한데, 교사가 설계한 수업에 유아가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 때 연구자인 교사에게만 유아의 연구참여 철회권을 보장하는 일이 위임되어서는 안되며 교사 외에 교육기관 내·외부에서 연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유아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연구참여 철회에 대한 유아의 비언어적인 의사표시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유아의 상태를 체크하고, 매 자료 수집 때마다 유아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 연구자는 침묵하는 유아의 수업권과 연구참여 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글학교에서 자료 수집하던 것을 멈추고, 학부모의 동의 하에 한글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침묵하던 유아를 제외한 유아들과 추가수업을 운영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자가 수업을 운영하며 현장노트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당시 현장 기록보다는 수업을 충실히 운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대신 수업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수업 중 관찰했던 내용을 현장노트에 기록했고 녹음된 자료를 전사했다.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교사가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IRB에서 허가받은 연구보조인력이 연구자를 대신하여 현장노트를 기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유아교육기관 원장이나 교사에 의해 시행되는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구자의 이익과 연구참여자의 이익이 상충될 때 연구자의 이익을 견제하고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할 방안은 무엇인가?
- 유아들의 연구참여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학부모님의 연구참여 동의만으로 충분한가? 유아가 성인의 지시와 개입에 순순히 따르는 것만으로 유아가 연구참여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연구 시작 전, 유아의 학부모가 연구참여에 동의를 하고 유아 역시 묵시적으로 이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연구가 시작되면서 유아가 자신의 연구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유아의 연구참여 철회 의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유아의 특성상 철회의사를 비언어적으

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비언어적인 철회의사를 파악할 방법은 무엇인가?

- 연구자 이외에 제 3자에 의해 유아의 철회의사를 감지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례 1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자의 윤리 교육

연구배경

대체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선정, 참여시키고, 진행하는 모든 연구과정을 연구자의 상식과 양심에 맡기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도덕적 지침이 연구자에게 중시되지 않고 있음을 물론 이에 대한 법적 기준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도 없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은 일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다. 성인인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결정하고, 아동은 참여하게 되는 프로세스에서 연구자는 아동·청소년 연구와 관련된 그 어떠한 윤리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가 윤리적으로 둔감하여, 윤리적 이슈에 직면하더라도 적절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아예 윤리적인 이슈를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법적 기준과 제도적 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이를 대체하는 노력으로 개별연구자를 양성하는 대학, 대학원 차원에서의 연구 윤리 교육 제공을 제안한다.

윤리적 문제

연구자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종종 던지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인들이 정확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반면 아동들의 경우 대다수 그렇지 못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연구대상에 대한 배려가 따라주어야

한다. 이를 상식 또는 연구 풍토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동 연구가 아동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아동 연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리와 관련되어 아동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연구과정에서 아동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연구자들이 개별 연구자로 양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아동 권리와 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아동 연구 윤리 교육은 아동에 대한 보호는 물론 연구자에 대한 보호 장치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원에서는 필수 이수 과목으로 연구방법론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학이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와 사설기관에서 통계 강좌가 개설되기도 한다. 연구방법론 교육이 과열되게 나타나는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는 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서도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개별 연구자를 양성하는 대학원에서 연구 윤리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여 예비 연구자들에게 아동 대상 연구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비 연구자들이 아동 대상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 연구 세팅 전에 설계되어야 할 요소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둘째, 학교는 물론 학회 차원에서도 연구자를 대상으로 윤리지침들을 교육할 수 있다. 학회는 예비 연구자들은 물론, 기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시하는 차원보다 광범위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연구대상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는 권리,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 비밀보장의 권리, 정서적 고통이나 긴장을 거부할 권리, 사전 동의를 권리,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아동에게 교육해야 한다.

성찰적 질문/고려사항

- 연구자는 연구의 세팅에서부터 아동 대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아동의 행복을 연구의 최우선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아동 연구 윤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연구자는 연구 대상 아동을 위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제 VI 장

요약 및 논의

1. 요약
2. 논의

제 VI 장 요약 및 논의

1. 요약

21세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전문학술지가 국내 학계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연구수행에 있어 윤리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수준은 서구사회의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학계 내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인 연구대상자가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 연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지금까지 발간된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개론서들 중 보편타당성과 시의성, 전문성이란 면에서 단연 으뜸이라 평가받고 있는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이란 아동대상 연구윤리 지침서는 작금의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풍토 개선과 연구윤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기대를 갖고, 국내 청소년 정책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ERIC을 유니세프의 동의하에 번역 및 발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ERIC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 및 취재 윤리 관련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한국사례들을 별도로 고찰하였다.

유니세프(UNICEF)의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를 포함한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 관련 강령과 지침서들의 효시는 뉴럼버그 코드(Nuremberg Code)로 알려져 있다(Steneck, & Zinn, 2006;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뉴럼버그 코드의 핵심은 제1조항인 피실험자의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에 대한 규정이다. 뉴럼버그 코드 제정 이후 세계의학협회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보다 구체화한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을 1964년 헬싱키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헬싱키 선언문(Declaration of Helsinki)이다. 연구윤리사적으로 이 선언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① 의학 관련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을 본격적으로 공식화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기여했으며, ② 아동과 같이 자발적 동의(voluntary consent)를 하더라도 자기결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대상에게는 법적 대리인(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최초의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③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s)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서이중, 2013; 한국아동권리학회, 2005).

2013년에는 유엔 산하 유니세프(UNICEF)의 주도로 아동⁶⁾ 대상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지침서인 ERIC이 발간되었다. 유니세프는 국제 ERIC 현장에서 “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적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등 연구자의 7대 지침을 제시하였다. ERIC의 현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 규정의 일차적 책임은 각 연구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겠지만, 더 나아가 연구윤리 확보라는 소명의식을 지닌 연구 커뮤니티의 공동의 의무이다. 이 같은 아동의 인권보호는 ‘존중’에서 시작된다. ERIC은 아동의 의견, 문화, 역량을 존중하고 아동의 다양한 기여를 중시하라고 강조하며 아동의 의견, 문화, 역량을 존중하고 아동의 다양한 기여를 중시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 중에 “균형 있고 공정한 이해”에 기반을 둔 아동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철회의사를 밝힐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ERIC의 조항들은 앞서 살핀 뉴럼버그 코드와 헬싱키 선언문의 내용과 함께 195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에 기반을 둔 것이다.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의 요지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ERIC은 국제 ERIC 현장 7대 조항에 의거하여 ① 피해와 혜택, ② 사전 동의, ③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④ 지급 및 보상에 관한 네 가지 연구윤리지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번역서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CRC)의 1조는 “18세 미만의 성인이 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ERIC은 서두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15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ERIC이제공하는 윤리규범이 쉽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조). ERIC 현장 7대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는 모두의 책임이다; ② 아동의 존엄성 존중은 윤리적 연구의 핵심이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정당하고 공평해야 한다; ④ 윤리적 연구는 아동에게 득이 된다; ⑤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은 결코 위해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⑥ 연구는 반드시 아동의 사전 동의와 지속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⑦ 윤리적 연구는 지속적인 성찰을 요한다.

연구윤리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아동·청소년 대상 취재 및 보도윤리도 중요하다. 기자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취재는 연구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실험이나 설문처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자들은 대체로 취재나 보도를 할 때 아동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보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시키고 그들의 사진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Fullerton, 2004). 그러나 불행히도 아동·청소년들을 취재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의 태도가 실제 취재 현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 논의

앞서 살핀 것처럼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1) 첫째, 연구자의 무지로 연구부정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2) 연구부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관행’으로 치부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그리고 3) 연구자간 과열경쟁이나 연구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예: 승진, 연구비, 임용 등)을 탐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이 종종 범하는 비윤리적 연구행태도 학계의 관행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성과중심의 학문풍토 속에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분명한 연구윤리 규정을 제시하고 사전 교육을 시키지 않아 자신의 행위가 연구윤리에 반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윤리교육과 함께 연구윤리에 대한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우리나라 법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 연구윤리교육을 관행이나 개인윤리의식에 맡기지 않고 공식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2) 대학·대학원에서의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정착 시키며, 3) 초등 및 중등과정에서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기존 교과와의 연계를 이룰 필요가 있다(최용성, 2007). 정부가 주도하던 개별연구기관의 자율성에 맡기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분명하고 체계적인 연구윤리 관련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및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상황적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기에 별도의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한 후 관련법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자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취재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윤리 규범이 불분명하다. 기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취재와 보도를 할 때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 가운데 하나로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의 아동대상 ‘보도지침 (Reporting guidelines)’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은 모두 6개 항목의 ‘기본원칙 (Principles)’과 6개 항목의 ‘아동대상 인터뷰 지침(Guidelines for interviewing children),’ 그리고 7개 항목의 ‘아동대상 보도 지침(Guidelines for reporting on children)’과 함께 그 항목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포함해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들은 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처럼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아이의 아픔이나 슬픔이 재발하도록 하는 언급이나 질문은 하지 말라거나, 아동들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언제나 정확한 전후관계(context)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인들의 취재나 보도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쉽게 상처 받고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각 연구기관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들에게 심리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조사방법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윤리위반행위를 초래했을 때는 엄격히 제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연구자들의 인식의 제고이다. 사회에 궁극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해요소가 있다면 그 연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연구자 개인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야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권리침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연구자들에게 톰킨스가 언론인들에게 제시한 ‘아동을 인터뷰할 때의 황금률(golden rule for interviewing children)’을 인용하여 만든 다음의 문장을 권고한다:

“연구 대상자가 당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라. 다른 연구자들이 당신의 아이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하라.”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옥주(2002). 뇌른베르그 강령과 인체실험의 의미. 의료·윤리·교육. 5(1). 15-35.
- 김수정(2014년 4월 10일). '과열 보도'로 성범죄 피해자 거듭 '희생양' 만드는 언론: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패소한 채널A, 항소.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0>
- 김청송(2014). 청소년심리학의 이론과 쟁점. 서울: 학지사.
- 김희영(2014년 4월 15일). 언론, 피해자 가족 두 번 올린다: '칠곡사건' 과잉 취재로 피해 아동 언니 거쳐 옮겨 다녀.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3321>
- 남명진(2011). 연구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코사이언스.
- 보건복지부(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배우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건복지부.
- 서이중(2013).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서울: 박영사.
- 생명윤리(2000). 벨몬트 보고서: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과 지침. 생명윤리 1(1), 13-21.
- 안혜준(2008). 유아와 함께 하는 연구의 교육적 의미. 변형영유아교육연구. 2(1), 101-118.
- 연합뉴스(2014년 4월 9일). '칠곡사건' 과열 취재 경쟁에 인권 침해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53933>
- 이부미(2013). 유아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질적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6), 31-55
- 이인재(2010).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제21집, 269-290.
- 최영주(2014년 4월 16일). 언론은 또 다른 아동 범죄 가해자: 인권보도준칙 부용지물·자극적 소재로 전략...제도 개선으로 눈 돌려야. PD 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78>

- 최용성(2007).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13집, 261-290.
- 한국아동권리학회(2005). 아동권리 보호와 연구윤리. 서울: 학지사.
- 한상연(2012). 우리나라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0(4). 1-24.
- Allen, T. (2003). A thin line: How far should journalists go to protect at-risk sources. *Quill*, 91(1), 8-11.
- Black, J, Steele, B, & Barney, R. (1999). *Doing ethics in journalism: Handbook with case studies* (3r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Coleman, R. (2011). Journalists' moral judgment about children: Do as I say, not as I do? *Journalism Practice*, 5(3), 257-271.
- Elliott, D. (1990). Suffer the children: Journalists are guilty of child misuse., *FineLine: The Newsletter on Journalism Ethics*, May, 1-8.
- Fullerton, R. S. (2004). Covering kids: are journalists guilty of exploiting children?. *Journalism Studies*, 5(4), 511-524.
- Mackay, J. B. (2008). Journalist Reliance on Teens and Children.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3(2), 126-140.
- Resnik, D. B. *The Ethics of Scien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loven, N. B., Watson, A. C., Gracia, G., & Corrigan, P. W. (2007). Age analysis of newspaper coverage of mental illnes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1), 3-15.
- Steneck, N. H., & Zinn, D. (2006). 연구 윤리 소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원저 2004년 출판).
- Stone, E. (1999). Using children as sources: Dilemmas for journalists. *Columbia Journalism Review* 38(3), 32-34.
- Tompkins, A. (2002). Guidelines for interviewing juveniles. Retrieved from <http://www.poynter.org/uncategorized/1819/guidelines-for-interviewing-juveniles/>
- U.S Government(1949). *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s under Control Council Law No. 10, Vol. 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201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 <http://www.hhs.gov/ohrp/humansubjects/guidance/45cfr46.html>
- UNICEF(2013).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UNICEF.
-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2014). IRB Forms & Documents.
<http://www.albany.edu/orrc/irb-forms.php>
- Wee, B. S. & Anthamatten, P. (2014). Using puotography to visualize children’s culture of play: a socio-spa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104(1), 87-100.
- Williams, N. (1997). Practice and Implementation. The theme day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dren and the Medi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5(2), 263-266.

집 필 진

배 상 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 현 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연구보고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인 쇄 2014년 9월 5일

발 행 2014년 9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742-0 94330

978-89-7816-724-6 (세트)